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출산대체 보육전문요원)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개요

가. 직종 및 인원: 출산대체 보육전문요원 2명

나. 담당업무

A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직원 교육사업·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부모교육· 정보 및 홍보사업· 부모상담 등

※ 담당업무는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요건(공고일 기준)

-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60세(정년) 미만인 자
- 성별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영유아보육법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보육관련 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공백이 없는 사람(장기 미종사자 교육이수자 제외)
- 보수교육을 받은 지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공고일 기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

다. 가점기준

구분	대상	우대 요건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 상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면접 각 항목 40% 이상 득점 시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면접 만점 5%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증명서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p> <p>○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중복 적용 불가)</p> <p>○ 사회적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①→③ 순으로 우대</p> <p>※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p> <p>※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3.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지: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나.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주 5일 근무

다. 보수수준: 당해연도 보육사업안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

※ 부가급여는 내부규정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따른 기타 부가급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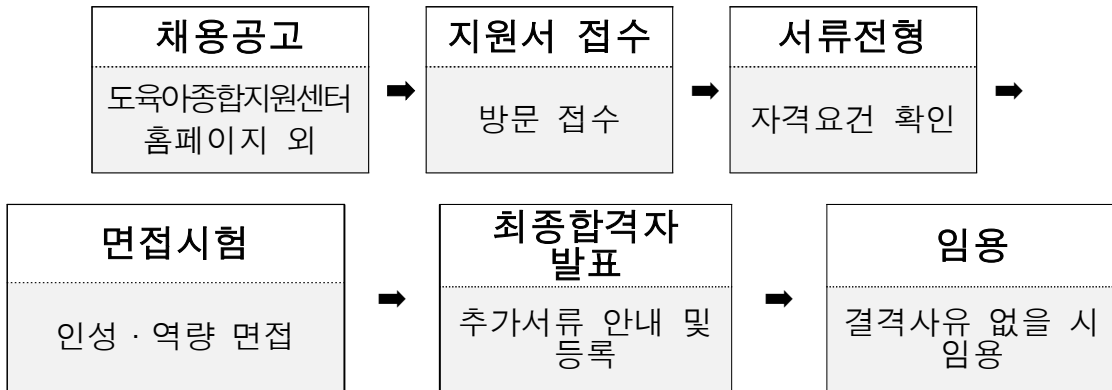
라. 채용조건: **기간제**

구분	A	B
계약기간	2026.4.1.~2027.5.28.	2026.4.1.~2027.7.29.

4. 시험단계 및 채용절차

가. 시험단계: 서류전형 → 면접시험

나. 채용절차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5. 시험세부내용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1) 채용공고

○ 공고기간: '26. 3. 3.(화) ~ 3. 17.(화)

- 공고장소: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

2)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6. 3. 10.(화) ~ 3. 17.(화)
- 접수방법: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26, 3층)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격 적격여부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 채용 형식은 정보가림 채용방식으로 진행

나. 서류전형

1)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 서류전형일정: '26. 3. 18.(수) 10: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시험위원: 2명(내부위원)

2) 심사방법

-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적격여부 결정
 - ※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 응시기회 부여

3) 합격자 결정

평가항목	합격자 결정 기준
· 응시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 채용분야 응시자격이 “적격” 인 자

4)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3. 19.(목) 10:00
-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다. 면접시험

1) 일시/장소 및 시험위원

- 일시: '26. 3. 24.(화) 10:00 예정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교육실
- 면접위원: 3명(내·외부위원)

2) 심사방법

면접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기준	배점
① 용모 및 태도 ② 인품 및 성격 ③ 장래성 직업관 ④ 전공지식 및 아동관 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사회적취업취약계층(①→③) -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①→②→③→④→⑤)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100점

6. 채용일정

구 분	일정
공고	' 26. 3. 3.(화) ~ 3. 17.(화)
원서접수	' 26. 3. 10.(화) ~ 3. 17.(화)
서류전형	' 26. 3. 18.(수) 10: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3. 19.(목) 10:00
면접시험(인성 · 역량면접)	' 26. 3. 24.(화) 10:00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26. 3. 25.(수) 10:00 이후
임용예정일	' 26. 4. 1.(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 단계별 일정 공고 시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제출서류

- 제출기간: '26. 3. 10.(화) 09:00 ~ 3. 17.(화) 18:00
- 제출방법: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구 분	내 용	비고
입사지원서 접수	1. 응시원서 [서식1] 2. 자기소개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3] 4. 재직/경력 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시간제 근무, 프리랜서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만 제출하고 건강보험(또는 고용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5. 자격증 사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재직·경력 확인용)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 전체 기간'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8. 보수교육 이수증 ※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필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사회적취업 취약계층 증명서	해당자
최종합격자 (합격일 이후 발행)	1. 공무원용 인사기록카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 등본 4. 주민등록 초본 5. 공무원용 채용 신체검사서 6.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8. 후견 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9. 통장사본	

- ※ 정보가림 채용을 위하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최종 합격 이후 재직 및 경력증명 내역 수정 불가
- ※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8. 최종합격자 통지

1. 최종 합격자 통지

- 합격자 발표: '26. 3. 25.(수) 10:00 이후
-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2. 임 용

- 임용예정일: '26. 4. 1.(수)

9.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안내

1.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출
-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답변 처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2. 채용서류 반환

- 운영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출
- 반환방법: 입사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비용은 센터 부담)

10. 기타사항

-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정보가림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 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됩니다.
- 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바.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가점 확인 및 자격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사. 채용 결과 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자.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카.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 지원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서류 적부심사 시 결정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합니다.
- 파.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064-746-221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